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41호 2026. 10. 26.(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하천점용 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6-114호)

공 고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6-1342호)

○특정빈집 철거명령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6-135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예 천 군 수 (인)



구 분	하천점용허가
하 천 명	금곡천(지방하천)
점 용 자	한국수자원공사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7층
위 치	예천군 용문면 성현리 698-35번지 외 2필지 (하금곡리 621, 상금곡리 748번지)
점용면적	20㎡ (5㎡ × 4공)
점용목적	토지의 굴착
사업개요	예천군 지하수저류댐 상세조사 용역
점용기간	2026년 10월 26일 ~ 2027년 02월 13일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이장 결격사유를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고, 형 선고에 따른 결격 기간 등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이장 임명·해임 기준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장 결격사유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 종전 해임 사유를 인용하여 규정하던 이장 임명자격 기준을 별도의 결격사유 조항으로 분리·신설

나. 이장 결격사유 구체화(안 제2조의2)

- 형의 종류 및 집행 형태에 따른 결격 기간 등 세부 기준 명시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jh2920@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전화: 054-650-68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4조”를 “제2조의2”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 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 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 진 자이어야 한다.	제2조(임명자격) ①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임명일 현재 <u>제4조</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 <u>제2조의2</u>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u> 1. <u>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2. <u>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 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3. <u>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u>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제4조(해임)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 지를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 어야 한다. 1. (생 략) 2. <u>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u> 3. (생 략) 4. 「<u>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에 따른 <u>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u> <u><신 설></u> 5.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 <u>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u> <u>사실이 있는 경우</u>	<u>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u> 5.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 <u>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u> <u>사람</u> 제4조(해임) ----- ----- -----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2. (현행 제3호와 같음) <u><삭 제></u> 3. <u>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u><삭 제></u>
--	--

특정빈집 철거명령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하고자 「농어촌정비법」 제118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특정빈집 이해관계인의 우편물 반송 등 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예 천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특정빈집 철거명령
2. 행정처분 이해관계인 : 황○희

(단위 : m²)

건축위치	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면적	용도	구조	건축년도
풍양면 와룡리 653-5 (도로명 미부여)	김○규	황○희	89.93 (허가 2동 72.78/ 무허가 1동 17.15)	주택 /축사 /창고	토담조 토담조/스레이트	192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에 의거 세종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철거조치)에 따라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 처분
4. 처분의 내용 : 풍양면 와룡리 653-5 특정빈집 철거명령
(처분일로부터 60일 내 철거)
5.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특정빈집 철거명령

6. 청문일정

- 일시 : 2026. 11. 11.(목) 14:00~15:00
- 장소 : 예천군청 4층 영상회의실

7.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0.(18일간)

8. 의견 제출기한 : 2026. 11. 10.(화) 18:00까지

9. 의견제출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4층(농촌활력과)

10. 유의사항

- 귀하는 공고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농촌활력과(☎054-650-7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제출기관 : 예천군청(농촌활력과)

제출처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4층(농촌활력과)(우 : 36826)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